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 번호	8-154
----------	-------

제출년월일 : 2019. 5.
제출자 : 안산시장

1.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2. 제안이유

-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가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 공동 사업 등 책 읽는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흥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과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 칭(안 제2조)

- 본 회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라 칭함

나. 협의회 사업(안 제5조)

-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정보 교류 사업
- 책 읽는 도시의 사업 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연수 사업
- 독서 진흥 관련 기관·단체와의 공동 협력 사업
- 책 읽는 도시의 공동 사업
- 책 읽는 도시와 관련된 연구 및 홍보 사업
- 기타 책 읽는 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

다. 협의회 회원(안 제6조)

-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 현재 30개 지방자치단체 가입

라. 임원(안 제7조)

- 회장 1명, 부회장 2~3명, 감사 2명
-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임

마. 총회 및 의결(안 제10조)

- 협의회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단, 정관의 제정,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바. 정족수(안 제12조)

- 의결 :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사. 사무국 설치와 조직(안 제14조)

-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고, 회장 및 부회장 도시에서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음

아. 재원(안 제17조)

- 협의회의 경비는 회원 책 읽는 도시의 회비 및 특별회비,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 부담금(회비) 2백만원, 2019 2회추경 반영

- 붙임 1.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안 1부.
2.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관계법령 1부.
4. 방침결재문 1부.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안

제1장 총 칙

제1조(용어 정의) 이 규약에서 ‘책 읽는 도시’ 라 함은 시민을 위한 독서 환경 조성과 독서 생활화 프로그램의 시행 등 독서 관련 시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말한다.

제2조(명칭) 이 회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 표기는 Korean Association of Reading Book Cities(약칭 KARBC)라 칭한다.

제3조(목적) 협의회는 전국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흥 시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 또는 부회장 도시에 둔다.

제5조(사업)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정보 교류 사업
2. 책 읽는 도시의 사업 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연수 사업
3. 독서 진흥 관련 기관·단체와의 공동 협력 사업
4. 책 읽는 도시의 공동 사업
5. 책 읽는 도시와 관련된 연구 및 홍보 사업
6. 기타 책 읽는 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6조(회원) ① 협의회의 회원은 책 읽는 도시의 자치단체장으로서 본 협의회에 가입한 경우 회원으로 한다.

② 회원은 당해 직에 취임과 동시에 이 회의 회원이 되며, 퇴임과 동시에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임원)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3인
3. 감사 2인

②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회원 중 선임한다.

③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유고라 함은 사망, 사퇴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8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9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협의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④ 감사는 협의회의 재정 및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회의

제10조(총회) ①협의회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③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④임시회는 재적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⑤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전 회원에게 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하거나 토론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협의회 임원의 선임

2. 정관의 제정, 개정, 폐기에 관한사항

3. 예산·결산의 승인

4. 기타 제5조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중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정족수) ①제10조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1조 제2호의 사항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회원과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 도시의 대리인으로 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효력) 협의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모든 회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국

제14조(설치와 조직) ①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회장 및 부회장 도시에서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파견되는 직원의 실비보상비는 협의회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실비보상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15조(사무관리) ①사무국장은 회장 도시의 독서진흥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5급 또는 6급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제반 사무와 사무국 및 직원을 관리한다.

②부회장 도시에서는 6~7급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계획 수립 및 통보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정책사례 발굴
3. 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 통보
4. 예산 편성 및 집행, 회계관리
5. 책 읽는 도시 발전을 위한 진흥사업 추진
6. 책 읽는 도시 관련 연수 및 워크숍 개최
7. 책 읽는 도시 홍보사업
8. 기타 협의회 업무 제반 관련 사항

제5장 재정

제17조(재원)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 책 읽는 도시의 회비 및 특별회비
2.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
3. 기타 수입금

제18조(회비) ①회비는 총회(상반기)에서 익년도 회비 부담액을 정한다.

②회원 책 읽는 도시는 자치단체가 연간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제19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지출) 회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하고, 정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 협의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2.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
3. 사무소 사용료 및 집기 구입비
4. 회의 시 회의비와 식대 및 여비

제21조(예산 및 결산) ①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감사는 재정의 수입·지출을 결산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2조(제규정)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상징물) ①협의회의 대외적인 위상과 명예를 높이고 회원 간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② 상징물은 별표1과 같다.(*추후 별도 제작)

제24조(별도 규약) 이 법인의 법인화 추진을 위한 규약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회원 기초자치단체 명단

연번	지역	지방자치단체명	비고
1	서 울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4
2	인 천	미추홀구	1
3	경 기	군포시, 김포시, 안산시, 의정부시, 포천시	5
4	경 남	김해시, 창원시	2
5	경 북	구미시, 울진군, 포항시	3
6	전 남	광양시, 순천시	2
7	전 북	고창군, 완주군, 전주시	3
8	충 남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6
9	충 북	제천시, 증평군, 청주시	3
10	제 주	서귀포시	1

붙임 2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의회」 규약 제18조(회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
 - 부담금 : 2,000천원

4. 작성자 :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장 김 창 섭